약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MetLife

함께 찾아가는 인생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①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기본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이하 “미화” 라 하며, 그 단위는 “달러” 라 합니다)이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미화로 보험료 등을 납입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이 특약을 통해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 라 하며, 그 단위는 “원” 이라 합니다)로도 보험료 등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주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관계 관련 용어

(1)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환산기준 관련 용어

(1)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 이라 합니다)이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고시환율 예시(단위 : 원)

주거래 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 기준율	현찰		송금(전신환)		납입 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 매도)	받을 때 (전신환 매입)	
미국 USD	1,150.50	1,170.63	1,130.37	1,161.70	1,139.30	1,150.50 ~ 1,161.70

해당 일에 적용되는 납입기준 환율을 알아봅시다. 회사는 해당 일에 최초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 매도율)의 범위에서 납입기준 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일의 매매기준율은 1,150.50원이며 전신환매도율은 1,161.70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50.50원과 1,161.70원 범위에서 납입기준 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신환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은행이 송금 상대방 통화로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며,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 송금환율(보낼 때)로 표기됩니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2)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3)환산기준일
계약의 보험료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되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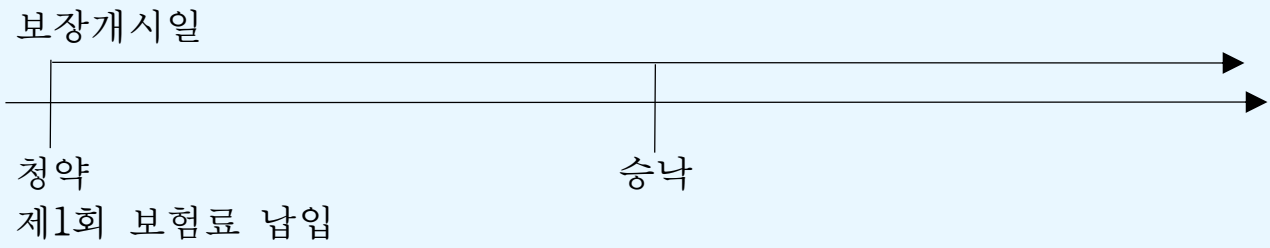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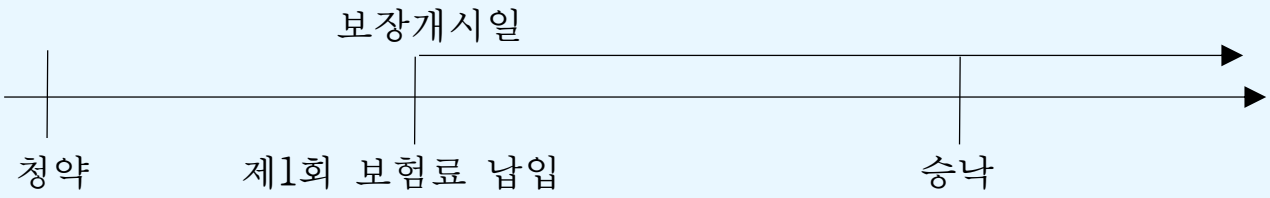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 특약을 주계약의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 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4조(특약의 보장개시)를 따릅니다.

제4관 계약의 해지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가 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특약도 동시에 해지되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

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일

제10조 기준통화

① 주계약의 기준통화는 “미화” 로서 보험료 등의 납입이 “미화” 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이 특약을 통해 보험료 등을 “원화” 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적용환율

① 보험료 등의 납입은 납입 시점에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 또는 “미화” 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원화” 로 납입을 원할 경우 주계약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 로 환산하여 납입합니다.

제12조 환산기준일의 적용

① 납입형태에 따른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납입형태는 모두 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원화환산 납입서비스특약	초회보험료	계약당일
	선납보험료	선납당일
	부활보험료	부활당일
	계속보험료*	자동이체일 - 제1영업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일 - 제1영업일
	수시추가납입보험료	신청일 + 제2영업일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자동이체일 - 제1영업일
	계속보험료의 경우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납입될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당일의 납입기준환율을 적용함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초회보험료와 해당월의 수시추가납입보험료를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초회보험료와 함께 납입된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을 계약당일로 함	

단, 본 조에서 당일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라면 직전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예시]

1월 2일(영업일), 1월 3일(영업일),
1월 4일(공휴일), 1월 5일(영업일)

1.초회보험료 납입일이 1월 4일인 경우
⇒ 초회보험료를 계약당일에 납입하는 경우 계약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하며, 당일이 영업일이 아니라면 직전 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초회보험료 납입일인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직전 영업일인 1월 3일이 환산기준일이 됩니다.
2.계속보험료 자동이체일이 매월 5일인 경우
⇒ 계속보험료 자동이체일의 직전일인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자동이체일의 직전 영업일인 1월 3일이 환산기준일이 됩니다.
3.계속보험료 $200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 할 경우,

(1월 3일 납입기준환율은 $1 = ₩1,160 로 가정)
⇒ 계속보험료 자동이체일의 직전일인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자동이체일의 직전 영업일인 1월 3일이 환산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보험료로 납입하는 원화환산보험료는 $200 x ₩1,160 = ₩232,000이 됩니다.

제13조 정기추가납입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의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매월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정기추가납입 보험료는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2일(영업일), 1월 3일(영업일),
1월 4일(공휴일), 1월 5일(영업일)

1.기본보험료 $200 + 정기추가납입보험료 $100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 할 경우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일의 직전일인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자동이체일의 직전 영업일인 1월 3일이 환산기준일이 됩니다.
(1월 3일 납입기준환율은 $1 = ₩1,160 로 가정)
⇒ 1월에 자동이체 납입하는 총 원화환산보험료는 $300 x ₩1,160 = ₩348,000

제14조 수시추가납입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의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2일(영업일), 1월 3일(영업일),
1월 4일(공휴일), 1월 5일(영업일)

1.수시추가납입 신청일이 1월 2일인 경우,
⇒ 수시추가납입 신청일인 1월 2일로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3일은 영업일이나,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환산기준일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인 1월 5일이 됩니다.
2.수시추가납입보험료 $1,200을 1월 2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 + 제2영업일인 1월 5일의 납입기준환율은 $1 = ₩1,160로 가정)
⇒ 신청일 + 제2영업일인 1월 5일에 납부하는 수시추가납입을 위한 총 원화환산보험료는 $1,200 x ₩1,160 = ₩ 1,392,000

제15조 원화고정납입옵션

① 계약자가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경우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에 따라 **아래의 범위내에서 매월 고정된 원화고정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만원단위). 아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약 보험료 합계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8%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소신청 금액
P x 50%	(주계약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10%
P x 100%	(주계약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15%
P x 150%	
P x 200%	

* 특약보험료의 납입은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한합니다.
*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소신청금액은 천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 P =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대신청 금액	제약조건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특약보험료 합계의 비율)
P x 50%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30%	18%
P x 100%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80%	55%
P x 150%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230%	55%
P x 200%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280%	55%

*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대신청금액은 천원단위에서 올림처리 하며,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천원단위에서 내림 처리합니다.
* P =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특약보험료 합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위의 제약조건에 표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 추가납입 총납입한도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약관을 따릅니다.

② 원화고정납입보험료와 원화환산보험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원화고정납입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환산되어 적립됩니다. 따라서 적립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환율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원화환산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주계약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2(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하여 원화환산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1.원화고정납입옵션 신청시기 : 청약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원화환산보험료 : 미화 주계약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

험료 포함) x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3.미화추가납입보험료 : (원화고정납입보험료 - 원화환산보험료) ÷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선택하여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주계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소단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4.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 : 원화고정납입보험료와 원화환산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원화환산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과 함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하였을 때 원화환산보험료에서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하 “고정납초과보험료”라 합니다)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되어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하 “(기본)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으로 납입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된 고정납초과보험료를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관련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중도인출 수수료와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고정납초과보험료는 제12조(환산기준일의 적용)에 의해 원화고정납입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되어 (기본)계약자적립금으로 납입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해야할 고정납초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재조정하거나 원화환산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시1.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원화고정납입보험료 신청범위

(주계약 기본보험료 $900, 특약보험료 $100,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 ₩1,182 로 가정)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가 (P x 100%)인 경우 원화고정납입보험료는 아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최소신청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15%(천원단위 올림)

⇒ $1000 x ₩1,182 x 115% = ₩1,359,300≒ ₩1,360,000

1-2. 최대신청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80%(천원단위 올림)

⇒ $900 x ₩1,182 x 180% = ₩1,914,840 ≒ ₩1,920,000

따라서, 계약자는 ₩1,360,000 ~ ₩1,920,000 의 범위에서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미화추가납입보험료

(주계약 기본보험료 $900, 특약보험료 $100,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

으로 가정)

미화추가납입보험료 : (원화고정납입보험료 - 원화환산보험료) ÷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미화추가납입보험료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와 원화환산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납입보험료의 환산기준일 납입기준환율로 적용하여 환산됩니다.

2-1.2차월 미화추가납입보험료

(2차월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1,182 로 가정)

₩1,400,000 - ($1000 X ₩1,182) = ₩218,000

⇒ ₩218,000 ÷ ₩1,182 = **$184.44**(매월 환율에 따라 변동)

따라서, 2차월의 미화추가납입보험료는 $184.44 가 됩니다.

2-2.5차월 미화추가납입보험료

(5차월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1,050 로 가정)

₩1,400,000 - ($1000 X ₩1,050) = ₩350,000

⇒ ₩350,000 ÷ ₩1,050 = **$333.34**(매월 환율에 따라 변동)

따라서, 5차월의 미화추가납입보험료는 $333.34 가 됩니다.

[예시2.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900, 특약보험료 $100,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 보험료 납입 7차월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이 ₩1,500 이라고 가정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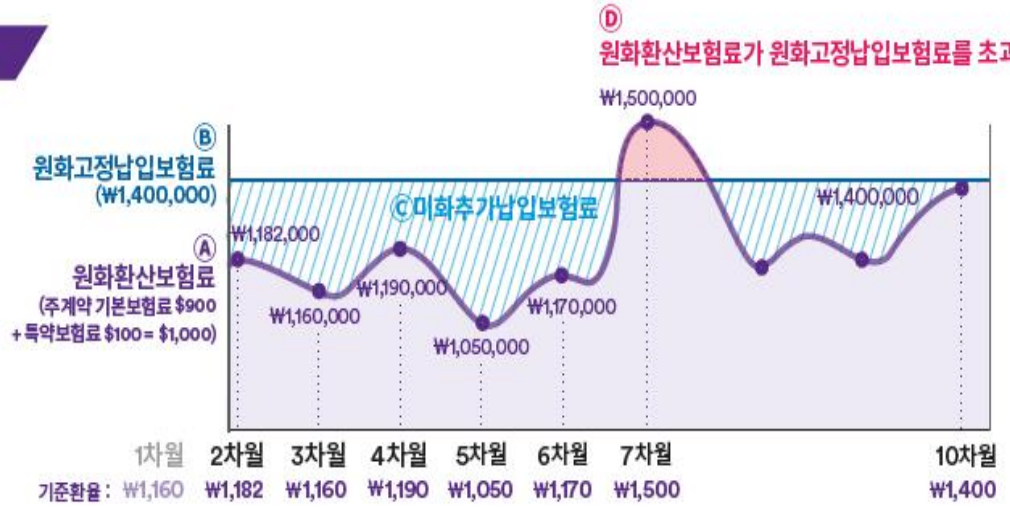
1.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 7차월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 :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과 원화환산보험료 ($1000 x ₩1,500 = ₩1,500,000) 중 큰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원화환산보험료 ₩1,500,000 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하였을 경우

⇒ 원화환산보험료 ($1000 x ₩1,500 = ₩1,500,000)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를 초과하였으므로, 고정납초과보험료 (₩1,500,000 - ₩1,400,000 = ₩100,000)를 납입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100,000 ÷ ₩1,500 = $66.67)은 (추가)계약자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되어 (기본)계약자적립금으로 납입됩니다. 이와 함께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환산 (₩1,400,000 ÷ ₩1,500 = $933.33)하여 납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7차월에 납입된 총 보험료는 고정납초과보험료 ₩100,000원과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을 합한 금액 (₩100,000 + ₩1,400,000 = ₩1,500,000) 입니다.

예시



Ⓐ 원화환산보험료	(주계약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x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원화고정 납입보험료	최소/최대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신청 - 최소신청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15%(천원단위 올림) ($900 + $100) x₩1,182 x 115% = ₩1,359,300 ≒ ₩1,360,000 - 최대신청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x 180% (천원단위 올림) $900 x ₩1,182 x 180% = ₩1,914,840 = ₩1,920,000
ⓒ 미화추가 납입보험료	[원화고정납입보험료Ⓑ – 원화환산보험료Ⓐ] ÷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 2차월 : (₩1,400,000 - ₩1,182,000)÷ ₩1,182 = $184.44 - 5차월 : (₩1,400,000 - ₩1,050,000)÷ ₩1,050 = $333.34
Ⓓ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고정납초과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1)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 신청 시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과 함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옵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정납초과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되어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으로 납입됩니다. - 7차월 : 원화환산보험료 (₩1,500,000)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 (₩1,400,000)를 초과하므로 고정납초과보험료 10만원 (₩1,500,000 - ₩1,400,000) 을 납입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인 66.67$(₩100,000 ÷ ₩1,500)가 추가계약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되어 기본계약자적립금으로 납입됩니다. 2)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 미신청 시 납입해야 할 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 150만원 ($1,000 x ₩1,500)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원화환산납입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등을 원화로 납입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원화보험료 등을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청약철회 / 계약의 거절 또는 반송 / 계속보험료 1회분 또는 정기추가납입 보험료 1회분의 반환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6조 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제12조(환산기준일의 적용)에서 환산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1.계약의 청약철회
2.계약의 거절 또는 반송
3.계속보험료 1회분 또는 정기추가납입 보험료 1회분의 반환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①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환산납입서비스는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